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3년 8월 29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30일

3. 제안이유

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기술자립화, 사업화촉진을 통해 안정적 국내 소부장 공급망을 구축하고 산업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에 따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기술혁신 전문펀드(모펀드)가 출자한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주)K&투자파트너스가 결성하는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 1호 투자조합」 출자를 위한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반영과 출자 여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4. 주요내용

가. 출자펀드 :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 1) 출자 약정 총액 : 210억 원
- 2) 업무집행조합원 : (주)K&투자파트너스
- 3) 유한책임조합원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충청북도,  
아이비케이저축은행(주), 산은캐피탈(주),  
(주)엔캠, (주)에스비아이캐피탈

나. 출자대상 : (주)K&투자파트너스(대표 김철우)

다. 출자기간 : 3년(2023년 ~ 2025년) \*사업기간 : 8년(2023년 ~ 2031년)

라. 출자총액 : 50억 원(2023년 20억 원, 2024년 20억 원, 2025년 10억 원 원)

마. 최초출자기한 : 2023년 9월 30일

바. 투자대상 및 의무투자 : 아래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할 것

- ① 소부장특화단지 소재(예정)한 제조기업(본사·공장) 등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

※ 단, 충청북도 소재 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 ② 소부장산업 관련 제조기업 등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
- ③ R&D 용도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
- ④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집행금액의 80% 이상 투자
- ⑤ 충청북도 소재 기업에 20% 이상 투자

※ 상기 ①의 중복 소재 소부장 특화단지에 투자하는 금액까지 고려 시, 중복 기업에 총 40% 이상

##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 가. 제출배경

-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가 결성하는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에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sup>1)</sup>제3항에 따라 출자 전에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를 통해 충청도 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출자의 필요성이 있음

### 나. 검토의견

#### ○ 출자의 배경 및 추진 경위

- 2022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한 펀드 출자를 제안
- 2022년 5월 23일, 충청도는 이차전지 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50억 원 출자 결정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의사 전달
- ✓ 2022년 8월, 도지사 출자 방침 결정(9일) 및 출자 의향 전달(10일)
- 2022년 9월 16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2022. 9. 16. ~ 10. 7.)
- 2022년 11월 17일, K&투자파트너스가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펀드 결성)

1)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출자의 배경 및 추진 경위(계속)

- 2023년 2월 13일, K&투자파트너스의 ‘케이앤 소부장 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요청
- ✓ 2023년 3월 10일, 충북도의 ‘케이앤 소부장 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 ✓ 2023년 4월,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펀드’ 결성 완료 및 기업투자 개시 등
- ✓ 2023년 5월 26일, 2023년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sup>2)</sup>  
 ※ 2023년 6월 1일, 심사 결과 확인(산업육성과-3145)
- ✓ 2023년 8월 29일,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및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sup>3)</sup>을 충북도의회에 함께 제출  
 ※ 2023년 8월 30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 ○ 출자의 가능성 및 필요성

-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8조<sup>4)</sup>에 따라 출자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4월 1일, 『2022년도 소재·부품·장비

2) 예산담당관-6698(20236. 6. 1.) ‘2023년 제2차 정기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알림’ (별첨 : 심사결과) 발췌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억원)	검토결과	
					내용	의견
본청	케이앤 소부장 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23.~'31.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펀드 출자 50억원	200 국 100 도 50 시군 - 기 50(민간)	출자 후 펀드 운용계획 수립	조건부

- 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케이앤 소부장 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기금전출금’ 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여 제출함(사업명세서 18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85쪽 참조)
-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3. 6. 13.] 제18조(소재·부품·장비 전문투자조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때에는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6. 20.>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 5. (생략)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안)』을 통해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1.6조 규모의 펀드 조성을 발표한 바 있고,

- 이어 2022년 10월 11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안정적 국내 소부장 공급망 구축을 위한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 200억 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음
- 이 펀드 출자는 정부 정책에 부합한 것으로 충북도의 성장유망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신규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집중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소부장 기업 투자 자금지원으로 충북도 내 고용창출을 견인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출자의 필요성은 있음

#### ○ 출자의 절차적 타당성 및 동의안의 구체성 문제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자의 가능성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출자의 절차적 타당성과 동의안의 구체성 등은 문제가 있음
- 출자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은 지난 2022년 8월이며,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출자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함께 제출된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음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출자의 전제조건으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의결의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출자 예산을 편성하려면, 출자 여부가 사전에 의결되어야 하므로 출자 동의안은 지방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함
- 이 동의안의 추진경위를 보면, 지난 2023년 2월에 위탁운용사로부터 출자 요청이 있었고, 이후 3월 충북도의 출자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음

-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된 시점은 2023년 5월 26일이며, 2023년 6월 1일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으므로 약 1달 가량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제410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제411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함<sup>5)</sup>
- 또한, 이 동의안의 내용적 구체성에 문제가 있음  
이 동의안은 ① 제안사유, ② 주요내용, ③ 참고사항(추진경위 등), ④ 관계법령 발췌로 구성되어 있으며, 겉표지와 붙임을 제외하면 2페이지에 불과함
- ②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출자펀드(약정총액 등), 출자대상, 출자기간, 출자총액 등 일반적인 개요에 해당하는 사항만 제시됨
- 즉, 출자 약정 총액은 210억 원이며, 충북도의 출자총액은 50억 원으로 3년 분할납부 한다는 것 등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없고, 관련 부서 검토결과,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며, 부실하게 작성됨<sup>6)</sup>

---

5) 제410회 임시회는 2023년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운영되었으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안은 회기 개시일 7일 전인 7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제410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제411회 임시회에 동의안과 추경예산안을 함께 제출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음

6) 붙임 관계법령에서 제시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내용은 2023년 12월 14일에 시행예정인 것으로 현행 법률과 다름  
현행 제1호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며, 차후 시행될 제1호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로 단순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용어가 바뀐 것이지만, 동의안은 현행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현행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 밖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

- 동의안에 따르면, 출자약정 총액은 210억 원임
- 지난 2023년 3월, 도지사가 최종 결재한 출자 계획 보고서<sup>7)</sup>에 따르면, 결성금액은 ‘200억 원 + α’ 로 모펀드 100억 원, 충북도 50억 원, 투자운용사 5억 원 등 200억 원이 확정되었다고 되어 있음
- 반면에 지난 2023년 5월 열린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된 투자심사 대상사업에는 국비 100억 원, 도비 50억 원, 민간 50억 원으로 총 200억 원으로 보고되었으며,
-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해 예산담당관에 제출한 자료<sup>8)</sup>에 따르면 총액 250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 도비 50억 원, 기타 100억 원을 제시하였음
- 투자비용이 각각 다른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동의안	출자계획보고	심사계획계획	심사서류
총 액	210억 원	200억 원 + α	200억 원	250억 원
보고일	2023. 8. 29.	2023. 3. 10.	2023. 5. 26.	2023. 3. 15.

7) 산업육성과-1556(2023. 3. 10.) 산업부 정책펀드인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 가 출자 하는 케이앤 소부장 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계획 보고

8) 산업육성과-1637(2023. 3. 15.) ‘2023년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심사서류 제출’



## 다. 종합의견

- (필요성) 이 동의안은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안정적 국내 소부장 공급망 구축을 위한 펀드 출자를 하려는 것으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지원을 위해 출자의 필요성이 있음
- (절차적 타당성)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여 의결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문제가 있음  
앞으로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함
- 다만, 이미 2022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50억 원 출자 의향을 전달하고, 2023년 4월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 결성이 완료되어 출자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동의안 제출의 절차적 문제와 동의안 내용의 부실함 등 앞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출자 후 펀드 운영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부’ 이행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
- 그 밖에 투자자산의 사후관리, 투자자산 회수, 리스크 관리 등 펀드 출자에 대한 향후 운용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